

건설공사 하도급관련제도 해설

김경희 / 대한설비건설협회 상임이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도는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여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1985년도에 도입되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법적장치의 미비로 초기에는 선언적인 법률로서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으나, 수차례의 법령 개정과정을 거쳐 그 실효성을 확보하였으며, 2004년 1월 20일에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이 개정되어 하도급대금에 대한 가압류 등 제3채권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보호할 수 있는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였다.

그러나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률,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이를 적용함에 있어 혼선이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여러 회원사 사장님이 법률적용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 발주처에 계신 계약담당공무원의 이해를 돕고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도에 대한 내용을 해설하고자 한다.

1. 총괄적인 개요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의 관련법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국가계약법)에 의한 회계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각각 명시되어 있다.

공사계약일반조건은 공공공사에 사용되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원도급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가 공사계약일반조건을 계약서의 일부로 사용된 공공공사라면, 계약서의 내용대로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만 한다.

다만, 원도급자의 기성대금에 전부명령, 가압

류 등 제3채권이 발생했을 때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진다.

하도급법에 의한 직불제도는 강행규정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요건이 발생되고 하도급자가 직접지급 신청을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여야만 한다.

다만, 하도급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와의 하도급계약이 하도급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하도급법을 적용받는 하도급계약에서의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은 우선순위에 따라 제3채권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대금직접지급 제도는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의 요건이 다른법령보다 많으나,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은 발주자의 의무사항이 아닌 권리사항으로 강행규정이 결여되어 있는 단점이 있다.

이번에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및 시행령이 개정되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위한 원도급자의 이행조치의 강행규정이 신설되었으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발생시점을 명확히 하여, 제3채권과 하도급대금직접지급과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였다.

개정된 하도급법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되며, 하도급계약의 적용요건도 2004년 4월 21일 이후 계약된 하도급거래부터 적용되나, 개정전 내용과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의 요건은 동일하므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도의 내용은 동일하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효력발생시점을 명확히 하여 제3채권과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였다.

지금부터는 3개 법령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도를 비교설명하고 각 법에 의한 하도급법의 직접지급제도를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하도급법을 적용받아 제3채권에 대한 대항권이 있는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제3채권과 하도급대금직접지급과의 우선순위와 이에 대한 규정 그리고 공탁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절차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하도급대금직접지급제도 내용의 해설을 숙지한 후, 기 계약된 또는 계약하고자 하는 하도급공사에 적의 적용하여 주시기 바란다.

2. 각 규정에 명시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관련내용 비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도는 위의 표에서 비교한 바와 같이 법령마다 직접지급요건의 차이가 발생되고, 또한 발주자에 대한 구속력의 차이도 발생된다.

공공공사의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가 발생되나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3채권에 대한 대항권이 없다.

금번에 개정된 하도급법에 공사계약일반조건과 동일하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요건이 신설됨에 따라 하도급자에게 제3채권에 대한 대항권을 갖을 수 있게 된다.

건설산업기본법과 달리 하도급법에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 요건에 하도급자의 직접지급의 요청이 반영된 사유는 민간발주공사의 경우 발주자의 신용도가 원도급자보다도 안 좋은 경우를 감안하여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한 하도급대금직접지급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도급계약이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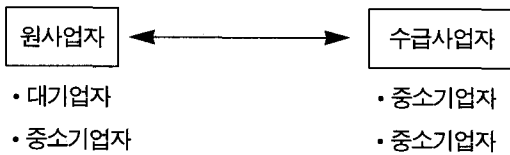
하도급법은 원도급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한 하도급계약을 강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므로, 하도급법을 적용받는 적용대상 사업자를 법으로 제한한다.

직접지급관련 법규 비교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	공사계약일반조건
요건	1. 파산·부도·허가·인가·면허·등록취소를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하도급자의 직접지급 요청 2. 직접지급 합의(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3. 하도급대금의 2회분이상 미지급 + 하도급자의 직접지급요청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미교부+하도급자의 직접지급요청(4항은 개정된 내용으로 2004.4.20일 이후 하도급계약된 공사부터 적용됨)	1. 발주자와 도급의 직불 합의 2. 하도급대금지급 판결의 확정 3. 수급인의 파산·부도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5. 발주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기간일 경우로서 • 하도급대금을 1회이상 지체한 경우 • 공사에정가격대비 88% 미만으로 계약된 공사	1. 하도급대금지급 판결의 확정 2. 계약상대자의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구속력	•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불의무(강행규정) •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 채권의 범위내에서 발주자의 공사대금지급의무소멸(그 후의 가압류 등은 무효)	• 직접지급 가능(의무사항이 아니라 발주자의 권리로 규정) •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발주자가 하수급인에 직접지급한 한도내에서 소멸	•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직접지급의무(의무사항) - 회계에규로 법적구속력이 없고, 가압류등이 집행된 경우 하수급인의 보호에 미흡

가. 하도급법적용대상 요건

1) 적용대상 사업자(법 제2조② 및 ③)



직전사업년도 원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액이 수급사업자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 한함

2) 적용제외대상

연간매출액이 일정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아래

기준에 의거하여 원사업자의 대상에서 제외(시행령 제1조의2)

구분	시공능력평가액
건설업	30억원 미만

※ 하도급법에서는 원도급자를 원사업자로 하도급자를 수급사업자로 표기함

나.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1) 법령내용

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4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0>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에 합의한 경우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채무와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③ 발주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당해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임금, 자재대금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당해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

은 이를 공제한다. <신설 2004.1.20>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 원사업자는 지체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0>

나)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함에 있어,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안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한다.

④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 또는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법령내용 해설

하도급법상의 하도급대금직접지급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한바와 같이 먼저 하도급계약이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어야 한다.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원도급자의 시공능력이 30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또한 원도급자의 시공능력이 하도급자의 시공능력을 2배를 초과하여야만 한다.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요건이 4가지로 되어 있으며, 이는 하도급법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법으로 격상시킨 것입니다. 다만, 법제14조제4호의 요건은 신설된 사항으로 2004년 4월 20일 이후 하도급계약분부터 적용된다.

4. 건설산업기본법률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

건설산업기본법은 모든 발주공사(공공발주공사, 민간발주공사)에 적용되는 법으로서 하도급법을 적용받지 않는 하도급공사에도 적용된다.

건설산업기본법은 포괄적인 법령으로 공사계약일반조건을 적용받는 공공공사, 하도급법을 적용받는 하도급공사와 달리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불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은 발주자의 판단에 따른 권리사항이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요건이 충족될 경우, 발주자의 의지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수 있다.

1) 법령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

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의 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안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발주자와 수급인간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2.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발주자가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 수급인이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나. 공사에정가격에 대비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4. 수급인의 파산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

5.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② 수급인은 제1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하수급인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하여 자신이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중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방법 및

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나) 법령해설

건설산업기본법의 하도급대금지급의 요건은 다른 규정보다 포괄적이어서, 공공공사의 경우, 현재의 낙찰률이 턴키공사를 제외한 모든 공사가 87.745% 이하이므로, 사실상 공공공사는 발주자의 의지만 있으면 모든 공사에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할 수 있다.

그러나 발주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사실상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받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또한 하도급법과는 달리 가압류, 전부명령 등 제3채권에 대한 대항권도 없다.

5.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

공사계약일반조건은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공사에 적용되는 계약서의 일부이므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된다.

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3조(하도급대가의 직접지급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하도급계약중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게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대가지급을 의뢰한 것으로 보

아 당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이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판결로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대금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2. 계약상대자가 파산, 부도, 영업정지 및 면허취소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할 대상중 그 지급보증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신고 또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기성대가의 지급청구를 위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하도급대가가 포함된 대가지급을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도급대가를 분리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나) 공사계약일반조건 해설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령에 의하여 원도급자가 하도급계약시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만 한다.

다만 하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공사와, 3천만원 이상인 공사의 경우라도 외부신용평가기관에서 2군데 이상에서 평가한 신용등급이 회사채 "A"등급을 받은 업체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다.

※ 참고 :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할 의무가 없는 건설업체 명단(별첨)

따라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하도급자에

게 교부하여야만 하는 하도급공사에 있어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하여야만 한다.

또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는 전문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시에는 30일 이내에 하도급계약내용을 통지토록 의무화하였으며, 통지할 때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사본을 첨부토록 하였으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 그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의무화됨.

6.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절차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절차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 규정에 따라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수 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시행규칙 제29조제2항

1) 하도급대금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가)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발주자에게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할 것

나) 발주자는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수급인에게 통보하고,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것을 권고할 것

다) 발주자는 수급인이 나목의 권고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공사대금부

터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것. 이 경우 하수급인이 지급받지 못한 하도급대금을 포함하여 지급하고, 수급인에게는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한다.

2) 공사에정금액대비 88%미만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경우

가) 수급인이 공사대금청구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을 명시하여 청구하도록 하되, 하도급대금의 수령인을 해당 하수급인으로 지정하도록 할 것

나)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3)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가) 발주자는 수급인이 파산 등으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것을 확인한 때에는 기성부분과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의 금액을 확정된 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과 지급할 금액을 통보할 것

나) 하수급인은 가목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청구할 것

다) 발주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청구를 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하고, 그 사실을 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라)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지급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받을 하수급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하도급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순위를 기준으로 하고, 그 시점이 같은 때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청구서의 접수일을 기준으로 할 것

그 사유가 제28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제2호가목 및 나목의 절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할 것

4)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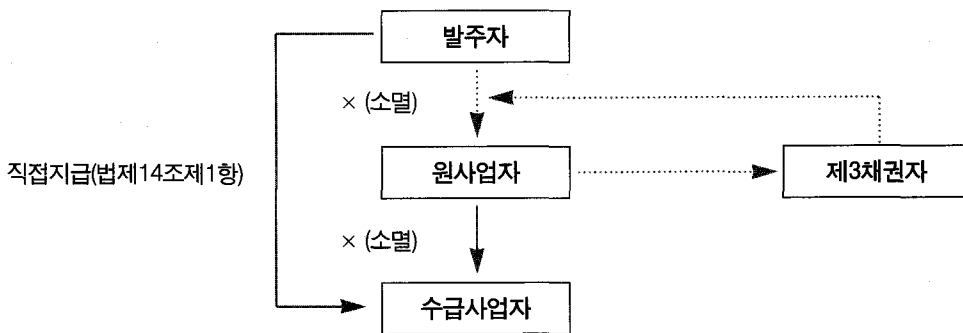
- 가) 발주자는 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등의 통보를 받았거나 동조제1항제1호 및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승낙을 하는 경우 수급인이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한다는 뜻을 수급인과 하수급인에게 통보할 것
-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유를 발주자에게 통보할 것
- 다) 발주자는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출한 사유서를 검토하여

7. 가압류·압류 및 전부명령(추심명령) 등과 직접지급제도

가. 문제의 제기

부도 등 원사업자의 재산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원사업자의 일반채권자로서는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등을 설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하도급법상의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는 가압류 등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참고자료〉 직접지급제도와 압류의 관계에 대한 도해



- × : 법 제14조제2항에 의한 채무소멸
-▶ : 공사대금 지급채무
- ▶ : 하도급대금 지급채무

한편,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법상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대금채권과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 채권이 대동액에서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직접지급사유 발생후 (가)압류 등이 송달된 경우

(예)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요건 충족 →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 압류 및 전부명령

이러한 경우에는 하도급법 제14조제2항에 의하여 직접지급사유 발생후 발주자에게 송달된 (가)압류는 직접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 채권의 범위에서는 이미 소멸한 채권을 대상(피압류채권)으로 한 것으로 무효라 할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대항력을 갖춘 채권양도나 전부명령의 효과와 비슷하며, 나아가 이처럼 무효로 되는 압류에 기초한 전부명령이나 추심명령도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처럼 직접지급사유가 가압류등의 송달일보다 먼저 발생한 경우라면 발주자는 압류 등과 관계없이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하여야 한다.

다. 직접지급사유 발생전 (가)압류 등이 송달된 경우

(예) 원사업자의 제3채권자가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대해 가압류 → 직접지급사유 발생 → 압류 및 전부명령

직접지급사유 발생후의 압류 등은 효력이 없다 할 것이나, 발생전의 압류까지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의 소지마저 있다.

압류 등이 있게 되면 압류된 채권의 처분권이 국가로 이전되고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므로 직접지급할 수는 없다.

따라서 수급사업자는 채권자 평등의 원칙에 따라 다른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압류하거나 배당에 참가할 수밖에 없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하도급법상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이전에 이미 가압류의 효력에 의해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이 제3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위하여 보전되었으므로 발주자로서는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라. 특별법에 의해 우선권있는 임금채권 또는 국세·산재보험료 등과 직접지급제도

(예) 산재보험료 등의 체납 → 직접지급사유의 발생 → 체납처분(압류)

근로기준법·국세기본법 등에 의해 일반채권에 대해 우선권을 가지는 임금채권·국세나 지방세·산재보험료 등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에도, 이러한 우선권은 체납처분(압류)을 전제로 배당절차에서의 다른 압류권자에 대한 우선권을 의미하므로 체납처분(압류)이 있기 전에 직접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서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자로부터 우선적으로 직접지급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체납사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체납처분을 구체적으로 한시기가 관건이다.

8.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도의 종합의견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제도는 공사계약일반 조건, 하도급법, 건설산업기본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으며, 적용범위, 적용대상도 각각 다르다.

따라서, 계약된 하도급공사가 어느 규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법 적용대상인 하도급공사는 공공공사인 경우에도 필요시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을 요청하여야만 하도급법을 적용받아 제3채권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개정된 하도급법시행령에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시점부터 그 효력이 발생되며, 그 사실은 하도급자가 증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제3채권보다 앞서서 하도급대금을 직접지급 요청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하도급자가 입증할 수 있도록 하여야만 한다.

[별첨]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업체 명단

(2003. 8)

연 번	상 호	대표자	지 역	신용평가기관등급			비 고
				한신평	한기평	한신정	
1	계룡건설산업(주)	이원보	대전	-	A-	A-	
2	금강종합건설(주)	윤용택	서울	-	A-	A-	
3	금광기업(주)	고경주	전남	A-	-	A-	추가
4	대림산업(주)	이용구	서울	-	A+	A+	
5	대성산업(주)	김영대	서울	A	-	A	
6	롯데건설(주)	임승남	서울	-	A+	A	
7	삼성물산(주)	배종열	서울	A+	A+	A+	
8	삼성에버랜드(주)	허태학	서울	-	A	A	
9	삼성엔지니어링(주)	양인모	서울	A-	A-	A-	
10	삼성중공업(주)	김징완	서울	-	A	A	
11	LG건설(주)	민수기	서울	A+	A+	A+	
12	(주)태영	변 탁	서울	-	A	A	
13	포스코건설(주)	박득표	경북	-	AA-	AA-	
14	한국전력기술(주)	박용택	경기	-	A+	AA-	
15	현대모비스(주)	박정인	서울	A+	A+	A+	
16	현대산업개발(주)	정몽규	서울	A	-	A	
17	현대중공업(주)	최길선	울산	A	A	A	
18	(주)효성	이상운	서울	-	A-	A-	

주) 공란은 회사체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항임